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98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987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055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유민경, 하희진

피고, 항소인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김은철

변론 종결 2022. 5. 19.

판결 선고 2022. 6. 16.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055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선택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임의탈퇴에 따른 분담금반환청구,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H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709호)에서 파기자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제6면 제9행의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 피고는 자신도 업무대행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가 위와 같이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2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2021. 11. 10.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후 60일 이내에 25,000,000원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계약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제9조 제3항)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1. 11. 10.자 준비서면 부분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아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김미리

판사조윤신